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707
----------	------

2021년 9월 10일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8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
라. 상정결과 :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(2021년 9월 9일,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문화본부장 주용태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,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
- 이에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(1) 사업개요

- 사 무 명 : 세종문화회관 출연금
-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- 필 요 성 :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, 공연, 전시, 세종문화회관 운영 등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- 사무내용
 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
 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 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
 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 -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탁하는 사업
- 소요예산 : 456억 5천만원(45,650,240천원)

(2)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

-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
- 규 모 : 대지 55,758 m^2 , 건물 63,396 m^2 (지하 3층, 지상 6층)
 - 공연장(세종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, S씨어터), 전시관(세종미술관, 세종충무공이야기), 교육시설(세종예술아카데미) 등

3) 전경 및 위치도



다. 참고사항

(1)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(2)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편성

(3)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경욱)

가.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종문화회관 출연 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것임.

나. 출연의 필요성

-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 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·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의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.

연도별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(안)
출연금 규모	28,826	32,831	35,823	35,663	45,650
전년대비 증감액	1,825	4,005	2,992	△160	9,987
전년대비 증감률	6.8%	13.9%	9.1%	16.4%	28.0%

다. 출연규모의 적정성

- 2022년도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은 456억 5천만원으로 2021년 출연금 356억 6천3백만원 대비 28%인 99억 8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음.

〈2021년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현황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		2022년(안)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본예산	최종예산 (A)			
출연금	34,519,157	35,662,789	45,660,240	9,997,451	28.0%

- 2022년도 세종문화회관의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5%에 해당하는 29억 3천2백만원이 증가한 616억 3천7백만원이며, 이는 출연금 456억 5천만원과 자체수입 159억 8천7백만원으로 구성된 것임.

〈 2022년도 세종문화회관 수입예산(안) 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21년	2020년	증감액	증감율
계	61,637	58,705	2,932	5.0%
출 연 금	45,650	35,663	9,987	28.0%
순세계잉여금	0	2,265	△2,265	△100.0%
자체수입	15,987	20,777	△4,790	△23.1%

- 주요 증액사업에는 일반운영경비 중 수선유지비와 지급수수료가 각각 전년 대비 133.1%(15억 8천만원), 24.1%(10억 8천 6백만원)가 증가하였고,

이는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자산취득 및 노후시설 교체 비용과 노후 기계 교체, 정보화 사업 등이 포함된 것임.1)

1) 대극장 엘리베이터 보수, 건축물 안전진단 등 6억원, 터보냉동기 노후화 교체 등 시설 교체 비용 16억원, 정보화사업 약 15억원

-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무기 계약근로자보수 40억 5천만원이 급여로 편성되었고, 대행사업인 ‘자치단체 간 교류사업’과 수탁사업인 ‘삼청각 운영’의 종료로 각각 2억 3천2백만원, 11억 8천만원 전액이 감액 편성되었음.

〈 2022년도 세종문화회관 지출예산(안) 〉

(단위 : 천원)
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2022년	2021년	증감액	증감율
총예산액				61,637,284	58,705,040	2,932,244	5.0%
일반관리비				46,407,280	42,471,710	3,935,570	9.3%
	인건비			27,904,557	26,981,799	922,758	3.4%
	인건비		급여	13,820,864	9,454,680	4,366,184	46.2%
			제수당	9,407,297	9,143,905	263,392	2.9%
			기타직보수	574,399	561,485	12,914	2.3%
			무기계약근로자보수	0	4,049,734	△4,049,734	△100.0%
			기간제근로자보수	325,077	225,435	99,642	44.2%
			퇴직급여	2,637,961	2,433,207	204,754	8.4%
			복리후생비	1,138,959	1,113,352	25,607	2.3%
	성과급			1,213,292	1,213,292	0	0.0%
	성과급		기관성과급	1,213,292	1,213,292	0	0.0%
	일반운영경비			17,289,431	14,276,619	3,012,812	21.1%
	일반운영비		복리후생비	3,705,220	3,687,892	17,328	0.5%
			직무수행비	176,000	170,000	6,000	3.5%
			여비	119,080	116,370	2,710	2.3%
			공공요금 및 제세	404,072	379,854	24,218	6.4%
			수도광열비	1,661,028	1,661,023	5	0.0%
			피복비	57,734	66,834	△9,100	△13.6%
			소모품비	526,959	506,469	20,490	4.0%
			도서인쇄비	160,170	150,000	10,170	6.8%
			지급임차료	195,800	169,200	26,600	15.7%
			수선유지비	2,590,936	1,111,281	1,479,655	133.1%
			차량유지비	18,360	12,750	5,610	44.0%
			보험료	106,090	103,058	3,032	2.9%
			지급수수료	5,593,211	4,506,891	1,086,320	24.1%
			업무추진비	153,040	153,040	0	0.0%
			관서업무비	123,742	122,902	840	0.7%
			교육훈련비	349,320	280,170	69,150	24.7%
			행사홍보비	302,600	377,825	△75,225	△19.9%
			회의운영비	126,220	123,120	3,100	2.5%
			보상금	431,240	421,040	10,200	2.4%
			포상금	43,200	42,000	1,200	2.9%
			자산취득비	445,410	114,900	330,510	287.7%
			시설비	0	0	0	0.0%
			감리비	0	0	0	0.0%
			시설부대비	0	0	0	0.0%

사업비(문화도시서울구현)		15,230,004	16,233,330	△1,003,326	△6.2%
공연사업		10,688,900	10,553,500	135,400	1.3%
	예술단공연	6,723,900	6,555,500	168,400	2.6%
	기획공연	3,165,000	3,153,000	12,000	0.4%
	주변활성화	0	0	0	0.0%
	나눔연계공연	800,000	845,000	△45,000	△5.3%
전시사업		984,280	1,034,280	△50,000	△4.8%
	기획전시	540,400	590,400	△50,000	△8.5%
	세종충무공이야기	443,880	443,880	0	0.0%
기획사업		170,000	170,000	0	0.0%
	후원회	35,000	35,000	0	0.0%
	민간기부기탁	80,000	80,000	0	0.0%
	개인기부활성화	55,000	55,000	0	0.0%
교육사업		1,335,194	1,290,348	44,846	3.5%
	정기강좌	495,194	499,348	△4,154	△0.8%
	기획강좌	80,000	75,000	5,000	6.7%
	청소년강좌	760,000	716,000	44,000	6.1%
시설운영사업		774,000	704,000	70,000	9.9%
	임대사업	4,000	4,000	0	0.0%
	수익개발	770,000	700,000	70,000	10.0%
대관사업		900,000	900,000	0	0.0%
	공연장대관	850,000	850,000	0	0.0%
	미술관대관	50,000	50,000	0	0.0%
대행사업		0	232,000	△232,000	△100.0%
	자치단체간 교류사업	0	232,000	△232,000	△100.0%
꿈의숲아트센터운영		377,630	162,835	214,795	131.9%
	꿈의숲아트센터운영	377,630	162,835	214,795	131.9%
삼청각운영		0	1,186,367	△1,186,367	△100.0%
	삼청각 운영		1,186,367	△1,186,367	△100.0%
예비비		0	0	0	0.0%

라. 2022년도 주요 현안

- 「2022년도 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」에 따르면 출자·출연기관 예산 중 경상경비는 2021년도 수준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,

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 예상분을 미리 반영하여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과 전례답습·관행적 사업 및 부진사업 등을 조정하여 전년 대비 20% 이상 감액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

2022년도 세종문화회관의 지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% 증가하였고, 이 중 경직성 경비인 일반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9.3% 증가한 것에 비해 사업비는 6.2% 감소하였음.

- 전반적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자체수입의 감소가 이뤄졌고,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소진하는 등 재정적 문제를 ‘출연금 대폭 증액 편성’²⁾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행태가 나타남.

이는 세종문화회관뿐만 아니라 시 출연재단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고질적인 문제이므로 해마다 ‘고비용·저성과’의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.

2) 2022년도 서울시 문화본부 산하 4개 재단의 출연금 편성액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'22년도	'21년도	증감
서울문화재단	68,357	58,763	9,595(16.3%)
서울디자인재단	33,000	20,975	12,025(57.3%)
서울시립교향악단	20,220	14,205	6,015(42.3%)
세종문화회관	45,650	35,663	9,987(28.0%)
합계	167,227	129,606	37,621(29.0%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

질문 :

답변 :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70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,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
- 나. 이에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 무 명 : 세종문화회관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
3) 필 요 성 :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, 공연, 전시, 세종문화회관 운영 등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
4) 사무내용

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
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
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
5) 소요예산 : 45,650,240천원

※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나.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

1)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

2) 규 모 : 대지 55,758 m^2 , 건물 63,396 m^2 (지하 3층, 지상 6층)

- 공연장(세종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, S씨어터), 전시관(세종미술관, 세종충무공이야기), 교육시설(세종예술아카데미) 등

3) 전경 및 위치도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이혜숙 (☎ 2133-2527)